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3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부과대상	금액
가. 법 제5조의2제1항,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6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제1항 제1호	기관	3,000
		개인	1,500
나. 법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	법 제72조제1항 제1호의2	기관	6,000
		개인	3,000
다.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제1항 제1호	기관	6,000
라. 법 제8조의5제3항(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), 법 제10조의2제2항, 제34조제11항 또는 제45조의5제1항·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제1항 제3호	기관	6,000
		개인	3,000
마.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72조제1항 제2호	기관	10,000
		개인	5,000
바. 금융지주회사등이 법 제34조제5항, 제45조의2제4항 또는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제1항 제4호	기관	10,000
사. 금융지주회사등이 법 제34조제6항·제7항, 제45조의2제5항·제6항 또는 제45조의3제4항·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제1항 제5호	기관	6,000
아. 법 제34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제1항 제5호의2	기관	6,000
자. 법 제48조의2제1항·제2항·제4항	법 제72조제1항	기관	10,000

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	제6호	개인	2,000
차.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	법 제72조제1항 제8호	기관	6,000
카.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고한 경우	법 제72조제1항 제9호	기관	6,000
타.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	법 제72조제1항 제10호	기관	6,000
파. 장부·서류의 은닉, 부실한 신고,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72조제1항 제11호	기관	10,000
		개인	5,000 다만, 임직원의 경우에는 2,000만원으로 한다.
하. 금융지주회사가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·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	법 제72조제1항 제12호	기관	2,000
거.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·제출·보고·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경우	법 제72조제2항 제6호	개인	200
너.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·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(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)	법 제72조제2항 제7호	기관	400
		개인	200